

## 위탁수수료징수기준

### 1. 위탁수수료의 징수율

#### 가. 일반징수율

(1) 상장주권(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및 해외주식예탁증서

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
2억원이하	0.4973%
2억원초과 5억원이하	0.4473%+100,000원
5억원초과	0.3973%+350,000원

(1-1)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
2억원이하	0.4981%
2억원초과 5억원이하	0.4481%+100,000원
5억원초과	0.3981%+350,000원

(1-2) K-OTC 등록주권

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
2억원이하	0.4973%
2억원초과 5억원이하	0.4473%+100,000원
5억원초과	0.3973%+350,000원

(2) 채권

1) 일반채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

잔존기간	수수료율
1년미만	거래대금의 0.1%
1년이상 2년미만	거래대금의 0.2%
2년이상	거래대금의 0.3%

2) 소액채권 : 매매거래대금의 0.6%

(3) 집합투자증권 : 매매거래대금의 0.3%

(4) 주가지수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1) 주가지수선물, 개별주식선물

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
5억미만	0.04481%
5억이상 ~ 10억미만	0.03981%+25,000원
10억이상 ~ 30억미만	0.03481%+75,000원
30억이상 ~ 50억미만	0.02981%+225,000원
50억이상	0.01981%+725,000원

2) 주가지수옵션

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
1,000만원미만	1.4956%
1,000만원이상	0.9956%+50,000원

(5) 상품선물·옵션

구분	수수료율	
	거래체결시	최종결제시
국제선물(3년·5년·10년·30년) / 통안증권 선물	8,000원/계약	8,000원/계약
미국달러·엔·유로 선물	1,600원/계약	1,800원/계약
미국달러옵션	거래대금의 1.50%	거래대금의 1.50%
금·돈육 선물	8,000원/계약	8,000원/계약

#### 나. 특별징수율

(1) 홈트레이딩서비스(HTS)<sup>주1)</sup>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주1) 홈트레이딩서비스 : 고객이 거래지점을 통하지 않고 당사 홈트레이딩서비스 약관에 의해 고객의 PC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이루어지는 매매

1) 상장주권(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및 해외주식예탁증서

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
100만원 미만	0.1473% + 1,500원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0.1173% + 1,000원
1,000만원 이상	0.0873% + 500원

1-1)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
100만원 미만	0.1481% + 1,500원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0.1181% + 1,000원
1,000만원 이상	0.0881% + 500원

1-2) K-OTC 등록주권 : 매매거래대금의 0.2%

2) 주가지수선물, 개별주식선물 : 매매거래대금의 0.00981%

3) 주가지수옵션

구분	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
개인	5,000만원 미만	0.4956%
	5,000만원 ~ 1억원	0.3456%
	1억원 ~ 5억원	0.2456%
	5억원 ~ 10억원	0.1456%
	10억원 이상	0.0706%
법인	금액구분 없음	0.4956%

4) 상품선물·옵션

구분	수수료율	
	거래체결시	최종결제시
국채선물(3년·5년·10년·30년)/ 통안증권 선물	4,000원/계약	8,000원/계약
미국달러·엔·유로 선물	800원/계약	1,800원/계약
미국달러옵션	거래대금의 0.50%	거래대금의 1.50%
금·돈육 선물	4,000원/계약	8,000원/계약

(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구분	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
주권,주식워런트증권(ELW)	금액 구분 없음	0.10%
주가지수선물, 개별주식선물		0.008%
주가지수옵션		0.25%

(3) 프로그램매매 : 매매거래대금의 0.1%

(4) 시각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주권매매시 : 1.-나(특별징수율)-(1)-1)의 수수료율

## 2. 협의수수료

### 가. 용어의 정의

(1) 협의수수료 : 고객계좌의 예탁자산 및 수탁수수료 수입등의 조건에 따라 당사에서 정하는 기준내에서 고객과 협의하여 적용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 오프라인 주문 : 당사 위탁수수료 일반징수율을 적용받는 주문을 말한다.

(3) 온라인 주문 : 당사 위탁수수료 특별징수율을 적용받는 주문을 말한다.

**나. 적용기준**

**(1) 적용대상**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 정한 전문투자자
-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권거래 고객
  - ① 예탁자산이 3억원 이상인 고객
  - 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내채권거래 고객
  - ① 예탁자산이 1억원 이상인 고객
  - 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 4)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 고객
  - ① 예탁자산이 3천만원 이상인 고객
  - 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2) 적용요율**

- 1) 주권거래 (K-OTC 제외)
  - ① 오프라인 주문 : 0.07% 이상
  - ② 온라인 주문 : 0.015% 이상
 단, 법인영업부서의 전문투자자는 오프·온라인 모두 0.015%이상 적용 가능
- 2) K-OTC 등록주권거래 : 오프라인 주문, 온라인 주문 구분없이 0.15% 이상
- 3) 장내채권거래 : 오프라인 주문, 온라인 주문 구분없이 0.07% 이상
- 4) 주가지수선물, 개별주식선물거래
  - ① 오프라인 주문 : 0.005% 이상
  - ② 온라인 주문 : 0.003% 이상
- 5) 주가지수옵션거래 : 오프라인 주문, 온라인 주문 구분없이 0.1% 이상

6) 통화선물 거래 : 오프라인 주문, 온라인 주문 구분없이 계약당 220원 이상

7) 국제선물 거래 : 오프라인 주문, 온라인 주문 구분없이 계약당 3,500원 이상

**(3) 적용절차**

- 1) 협의수수료 적용은 상기 (2) 각호의 범위내에서만 법인·채권영업 담당부서장 및 영업추진팀장의 승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 2) 상기 (2)의 각 호 한도 미만으로 협의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를 거친 후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 상기(1)의 협의수수료 적용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일지라도 아래 표의 기준 범위 내에서 담당임원의 승인을 거쳐 협의수수료의 적용이 가능하다. 단, 적용이후 해당고객이 협의수수료 적용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조건 충족에 따른 협의수수료 적용고객으로 전환된다.

구분	적용대상		적용요율	
	예탁자산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오프라인	온라인
주식	1억원 미만	-	0.10% 이상	0.07% 이상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5백만원 이상	0.09% 이상	0.06% 이상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백만원 이상	0.07% 이상	0.015% 이상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백만원 이상	0.05% 이상	0.015% 이상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백만원 이하	0.03% 이상	0.015% 이상
	20억원 이상	5백만원 초과	0.015% 이상	
선물	2천만원미만	0.5백만원 이상	0.01% 이상	0.005% 이상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	1백만원 이상	0.005% 이상	0.003% 이상
	3천만원 초과~20억미만	2백만원 이상	0.003%이상	
	20억 이상	5백만원 이상	0.001% 이상	
국제	10억 이하	3백만원 이상	계약당 1,500원 이상	

선물	10억초과 ~ 20억 이하	5백만원 이상	계약당 700원 이상
통화 선물	10억 이하	3백만원 이상	계약당 150원 이상
	10억초과 ~ 20억 이하	5백만원 이상	계약당 70원 이상
옵션	2천만원미만	0.5백만원 이상	0.15% 이상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	1백만원 이상	0.10% 이상
	3천만원 초과 ~ 20억미만	2백만원 이상	0.04% 이상
	20억 이상	5백만원 이상	0.025% 이상

**다. 헤지기준**

(1) 헤지대상

-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주권거래 고객
  - ① 예탁자산이 1억원 미만인 고객
  - 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고객
-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장내채권거래 고객
  - ① 예탁자산이 1억원 미만인 고객
  - 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고객
- 3)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 고객
  - ① 예탁자산이 2천만원 미만인 고객
  - 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고객
- 4) 상기 1) 내지 3)이외에 협의수수료를 적용받는 계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적용을 헤지할 수 있다.
  - 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② 기타 당사에서 헤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2) 헤지절차

- 1) 협의수수료 고객계좌에 대한 실적평가는 최초 적용월의 익월부터 산정하며, 적용후 3개월부터 매월 마지막 영업일 종료기준으로 해당계좌의 실적을 평가한다.

2) 해당계좌의 실적이 헤지기준에 해당될 경우, 익월 첫영업일에 자동 헤지 처리된다.

**3. 위탁수수료의 계산방법**

**가. 주권**

위탁수수료는 동일종목이 동일일에 성립(매도·매수를 구분한다)한 매매거래대금의 합계액에 위탁수수료의 징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2.-나.-(1)-1)에 해당되는 고객인 경우에 한해 동일 종목의 체결단가별 매매거래대금의 합계액에 위탁수수료의 징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나. 채권 및 수익증권**

위탁수수료는 매매거래대금에 위탁수수료의 징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추가지수선물·옵션, 개별주식선물, 미국달러옵션**

- (1) 위탁수수료는 동일 종목이 동일일에 성립(매도/매수를 구분한다)한 매매거래대금의 합계액에 위탁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최종거래일의 장종료시까지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경우, 선물의 최종매도는 매도대금에, 선물의 최종매수는 매수대금에 합산하며, 옵션의 권리행사는 매수대금에, 권리배정은 매도대금에 합산한다.

**라. 국제선물, 상품선물, 통화선물**

위탁수수료는 종목별, 체결일자별(매도/매수를 구분한다)로 합산하며, 체결된 계약수에 상품별 위탁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단수불산입**

위탁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시 행 일**

이 기준은 2009년 12월 1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0년 1월 4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0년 1월 18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0년 10월 4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7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1년 11월 7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1년 12월 7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2년 3월 2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매매전문클럽에 가입하여 협의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은 2012년 5월 31일에 한하여 적용한다.
- 이 기준은 2012년 6월 4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2년 10월 12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2년 12월 10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4년 8월 25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5년 4월 13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5년 7월 20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21년 6월 1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21년 9월 6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24년 2월 19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